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2
----------	----

2018. 10. 24.(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육미선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18년 10월 02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10월 04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0월 11일

-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육미선 의원)

가. 제안사유

- 충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정보 수집 및 정기 실태조사(3년)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 도 내 센터 현황(7) : 충북광역새일센터(1), 산단형 새일센터(1), 기초새일센터(5)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을 여성취업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임.

※ 조례 미 제정 지역(2) : **충북**, 강원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8.)에 따르면 최근 충북은,
  -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이 77.5%, 여성이 55.2%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약 22%p 수준으로, 전국 격차인 20%p보다 약간 상회하지만, 지난 10년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고용동향도 남성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2.6%p 증가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2.0%p 감소하여, 최근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20%p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미흡함.

※ 충북고용률: 남성 73.1%(17.8.) → 75.7%(18.8), 여성 54.3%(17.8.)→53.5%(18.8.)

#### <표> 경제활동현황 지표 (2018. 8. 기준)

(단위 : 천명, %)

	전국			충청북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15세이상인구	44,211	21,713	22,498	1,386	693	693
경제활동인구	28,039	16,045	11,995	920	537	383
비경제활동인구	16,172	5,668	10,504	466	156	310
경제활동참가율	63.4	73.9	53.3	66.4	77.5	55.2
실업률	4.0	4.2	3.8	2.6	2.2	3.2
고용률	60.9	70.8	51.3	64.6	75.7	53.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8. 기준

- 2017년 기준 충북의 15~54세 기혼여성 중 비취업여성은 32.7%, 경력단절여성은 17.6%를 차지하고 있음. 즉, 출산 및 육아, 돌봄 등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던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여전히 많이 있음.

**<표> 충북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 천명)

	2014	2015	2016	2017
15-54세 기혼여성	299	297	291	284
비취업여성	110	104	106	93
경력단절여성	67	57	58	50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충북이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임.
-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충북지역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에서는 법 제3조에 근거해 충청북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토록 규정하였음.

-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여성가족부와 통계청<sup>1)</sup>)에서 실시하는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 외에는 충청북도 차원의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중앙정부의 전국차원의 실태조사는 조사 케이스의 규모가 작아 충청북도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③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충청북도만의 시계열적인 자료로서의 그 유용도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충청북도의 관련 통계가 시계열적으로 축적되고 관리·활용되어 질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망 직종 선정 및 취업, 인턴취업,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홍보활동 등 추진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시행중인 충청북도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충청북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1)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래에 제시하는 상위법령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현황(7개소) :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1), 충북산단형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1), 기초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청주2, 충주1, 제천1, 영동1)

-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을 여성취업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직업훈련,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세부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절차상 지역 활동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2018. 9.19), 입법예고, 담당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거쳤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내용 및 절차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의안 번호	42
----------	----

발의연월일 : 2018년 10 월 2 일  
발 의 자 : 육미선,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이상욱, 최경천,  
이숙애, 윤남진

**1. 제안이유**

- 충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정보 수집 및 정기 실태조사(3년)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다.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라. 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 도 내 센터 현황(7) : 충북광역새일센터(1), 산단형 새일센터(1), 기초새일센터(5)
- 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을 여성취업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입
- 나.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45 호
- 다. 협의 : 여성정책관
- 라. 비용추계 : 불입

##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증가를 위한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발굴 및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제활동 촉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취업 지원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창업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6.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7.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계부서 및 도 내 관련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8.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용자, 구직자 등 대상 홍보활동 지원
  9.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취업 상담서비스 운영 지원
  10.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 2. 비용 발생 요인

- 실태조사, 경제활동 촉진사업, 광역새일센터 운영비 지원 등

## 3. 관련조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 제11조
-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

### 나. 추계 결과

- 새일센터 지정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지역맞춤형포함), 창업 및 경력단절예방지원
-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활성화
- 청년여성희망일터, 창업여성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 종사자 처우개선비
- 충북여성인턴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 다. 재원조달방안 (5개년 : 2018~2022년)

- 국 비 : 12,296,546천원 (48%)
- 도 비 : 6,405,540천원 (25%)
- 시·군비 : 6,752,655천원 (27%)

##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6. 작성자 : 여성정책관 박 현 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b>세 입</b>	<b>4,990,059</b>	<b>5,065,245</b>	<b>5,081,334</b>	<b>2,155,869</b>	<b>5,195,234</b>	<b>25,454,741</b>	
국 비	2,418,581	2,438,542	2,458,902	2,479,669	2,500,852	12,296,546	
도 비	1,245,420	1,286,971	1,268,851	1,280,969	1,323,329	6,405,540	
시군비	1,326,058	1,339,732	1,353,581	1,362,231	1,371,053	6,752,655	
<b>세 출</b>	<b>4,990,059</b>	<b>5,065,245</b>	<b>5,081,334</b>	<b>2,155,869</b>	<b>5,195,234</b>	<b>25,454,741</b>	
새일센터 지정운영	1,996,088	2,036,010	2,076,730	2,118,265	2,160,630	10,387,723	
취업지원센터 운영	263,200	268,464	273,833	273,833	273,833	1,353,163	
새일여성인턴	813,000	813,000	813,000	813,000	813,000	4,065,000	
직업교육훈련	668,249	668,249	668,249	668,249	668,249	3,341,245	
창업 및 경력단절예방	203,776	203,776	203,776	203,776	203,776	1,018,880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활성화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청년여성희망일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창업여성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중사자처우개선비	100,8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504,000	
충북여성인턴	676,946	676,946	676,946	676,946	676,946	3,384,730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140,000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30,000			30,000	60,000	
<b>재원 조달</b>	<b>4,990,059</b>	<b>5,065,245</b>	<b>5,081,334</b>	<b>2,155,869</b>	<b>5,195,234</b>	<b>25,454,741</b>	
의존 재원	소 계	3,664,001	3,725,513	3,727,753	3,760,638	3,824,181	18,702,086
	보조금	3,664,001	3,725,513	3,727,753	3,760,638	3,824,181	18,702,08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1,326,058	1,339,732	1,353,581	1,362,231	1,371,053	6,752,655	
기 타 (민간 자부담)							